#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056

발의연월일: 2021. 8. 13.

발 의 자:고용진・김경만・김수흥

김주영 · 김진표 · 문진석

박성준 • 안규백 • 양정숙

윤관석 • 윤준병 • 윤후덕

이용호 • 이원욱 • 정성호

진선미 • 천준호 의원

(17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원재료의 관세율보다 완성품의 관세율이 낮은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 나, FTA 체결로 인한 감면제도의 실효성 감소 등의 사유로 관세감면 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 조정을 거쳐 2026년 이후 폐지될 예정임.

항공정비(MRO)산업은 항공기 정비·수리에 필요한 항공기 부분품을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의 특성상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을 확보하기 어려워 FTA 활용률이약 18% 수준에 그치고 있음. 미국·EU·일본·싱가포르 등 대부분의국가가 국내 면세제도 또는 국제 협정을 통해 항공기 부분품을 무관

세로 교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감면이 폐지된다면 국내 항공운송산업뿐만 아니라 항공정비·제조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이에 우리나라도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하여 국내 관세법 개정 또는 국제협정(WTO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 가입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이나, 최종 정책결정까지 상당기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항공산업이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인 자국 항공산업의 생존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출보증, 세제지원 등 다양한 금융정책을 시행 중이며, 우리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세감면, WT O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 가입 등을 통한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정부 정책기조 및 해외 주요국 사례를 반영하여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을 포함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6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으로써 해 외 주요국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 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법률 제 호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6항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22년 1월 1일	2027년 1월	2028년 1월	2029년 1월	2030년 1월
부터 2026년 12	1일부터 12	1일부터 12	1일부터 12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	월 31일까지	월 31일까지	월 31일까지	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제89조제6항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22년 1월 1일	2027년 1월	2028년 1월	2029년 1월	2030년 1월
부터 2026년 12	1일부터 12	1일부터 12	1일부터 12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	월 31일까지	월 31일까지	월 31일까지	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혂 행 개 정 아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 ⑥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 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 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1.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 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 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 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 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2022년 2019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5월 1일 1월 1일 1월 1 1월 1 1월 1 <u>1월 1일 1월 1일 1월 1</u> 1월 1 1월 1 부터 부터 일부터 | 일부터 | 일부터 | 일부터 <u>부터 12</u> <u>부터 12</u> <u>일</u>부터 일부터 2021년 2026년 <u>12월 31 12월 31 12월 31 12월 31</u> <u>월 31일 월 31일 12월 31 12월 31</u> 12월 31 12월 31 일까지 일까지 일까지 일까지 <u>까지</u> 일까지 일까지 까지 일까지 일까지 100분 100분 | 100분 | 100분 100분 100분 100분 100분 | 100분 | 100분

의 100 의 80

의 60 | 의 40 | 의 20

의 100 의 80 의 60 의 40 의 20

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 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 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u>2019</u>	<u>2020</u>	<u>2021</u>	<u>2022</u>	<u>2023</u>	<u>2024</u>	<u>2025</u>
<u>년 5</u>	<u>년 1</u>					
월 1	월 1	월 1	<u>월 1</u>	<u>월 1</u>	<u>월 1</u>	월 1
<u>일부</u>						
<u>터 12</u>						
월 31	<u>월 31</u>	월 31				
<u>일까</u>						
<u>지</u>	<u>지</u>	<u>지</u>	즤	<u>지</u>	즤	<u> 지</u>
100	<u>100</u>	<u>100</u>	<u>100</u>	<u>100</u>	<u>100</u>	<u>100</u>
<u>분의</u>	분의	분의	분의	<u>분의</u>	<u>분의</u>	분의
<u>90</u>	<u>80</u>	<u>70</u>	<u>60</u>	<u>50</u>	<u>40</u>	<u>20</u>

⑦·⑧ (생 략)

2.	 	 	 
_	 	 	 
_	 	 	 
_	 	 	 
_	 	 	 

2022년1월 1일부터2026년12월 31일까지	<u>2027년</u> 1월 1일 부터 12 월 31일 까지	<u>2028년</u> 1월 1일 부터 12 월 31일 까지	<u>2029년</u> 1월 1일 부터 12 월 31일 <u>까지</u>	
100분의	100분의	100분의	<u>100분</u>	<u>100분</u>
<u>100</u>	<u>80</u>	<u>60</u>	<u>의 40</u>	<u>의 20</u>

⑦·⑧ (현행과 같음)